

##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653호

「철도용품 기술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367호, 2020.5.1.)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5월 19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명시하고, 기술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의 개정사항을 반영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철도용품 기술기준」 Part 1 총칙의 7.항 재검토기한의 시행기준 연도를 2022년으로 개정하고, 8.항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
- 나. 「철도용품 기술기준」 Part 4 궤도용품에서 인용하고 있는 표준인 KRS TR 0001(레일)이 KS R 9106(레일)로 통합됨에 따라 인용된 표준 변경

#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8일까지
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철도운행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lit.go.kr>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 
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
- 전화 : 044-201-4604, 4608 / 팩스 : 044-201-5672